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이 조례안은 2013년 6월 3일 임현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3년 6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개정이유

- 관광진흥법 개정에 의하여 과징금징수 업무가 종전 도지사에서 시장·군수 권한으로 변경되어, 조례 제5조의 과징금 부과·징수의 시장·군수에 위임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에 의거, 관광진흥법 관련업무 등이 경제자유구역의 시장·군수가 수행하는 사무는 광역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동조례에 근거조항을 반영하기 위함.
- 또한 일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근거법령 변경(안 제1조)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변경

4. 검토의견

금번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개정에 의하여 과징금징수 업무가 종전 도지사에서 시장·군수 권한으로 변경되어, 조례 제5조의 과징금 부과·징수의 시장·군수에 위임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에 의거, 관광진흥법 관련업무 등에 대한 광역시·도지사의 업무 근거조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붙임 : 1.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